

를 감면코자 하는 것은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된 세액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인수시 시세를 감면토록 하는 것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매각하기 위한 일시적인 소유이며,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2000년 말)으로 운용코자 하는 등 감면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셋째,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만 감면하였던 것을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국가유공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도 감면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 운용에 있어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상이용사 등)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을 현재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만 감면하던 것을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에 따라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들을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였고, 또한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기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토록 한 등 조례개정안은 타당하

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온 국가유공자와 사회활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후자전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감면규정 폐지와 중고건설기계 취득세 면제는 조례제정 당시의 상황이 변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할 것이며,
- 또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또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다만, 시세감면조례는 공평과세원칙의 예외로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시세감면 추계액은 약 15억원으로서 이를 서울시민들이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세운용에 있어 철저한 관리와 업무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547호

다. 제출일자 : 2000년 2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00년 3월 4일

2.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2000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함.

3. 주요내용

자치구청장에게 공공용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 영사관 이전부지를 각각 매각하고, 재건축사업지구 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공유지분 토지를 공유자에게 각각 매각하며,

<p>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p> <p>□관리계획 계상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지 매각 10건 : 15필지 12,743.4㎡ (3,854.8평) <p>4. 재산관리계획 주요내역(10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청장에게 공공용으로 매각(1건) 강서구 등촌동 531번지 5호 약 348평(약 1,152.1㎡)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시설용도로 강서구청장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 영사관 이전부지로 매각(1건)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 11호의 1필지 약 810평(2,680㎡)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영사관 건립용도로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 재건축사업지구 내 토지 재건축조합에 매각(3건) 강북구 미아동 5번지 55호 약 719평(2,381㎡), 강북구 미아동 5번지 56호의 1필지 약 1,214평(4,013㎡) 및 도봉구 창동 55번지 20호의 3필지 약 110평(364㎡)은 재건축 및 주택조합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건립용도로 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에 각각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 공유지분 토지 공유자에게 매각(1건) 서초구 반포동 745번지 4호 약 29평(96㎡)은 공유지로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면적 141평(467.8㎡) 중 약 112평(371.8㎡)을 소유하고 있는 제일약품(주)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함. ○ 보존 부적합한 토지 일반경쟁입찰 매각(4건) 송파구 송파동 104번지 외 3필지 약 622평(2,057.3㎡)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임. <p>5. 참고사항</p> <p>가. 관련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 	<p>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잡종재산의 매각)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p>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6. 검토의견</p> <p>□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p> <p>□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사안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안은 2000. 2.29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시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시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출한 2000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매각 10건(토지 15필지 12,743.4㎡ - 3,854.8평)입니다. <p>□다음은 주요 사안별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강서구 등촌동 531-5번지의 토지 약 349평(1,152.1㎡)를 강서구청장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동 매각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둘째, 종로구 구기동 139-11 외 1번지의 토지 약 812평(2,680㎡)를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2호(외교상 필요한 경우)와 외교관계에 관한비엔나협약 제21조 “외교공관을 위해 필요시 파견국의 영토에서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원조하여야 한다”는 협약에 근거하여 주한 벨기에 영사
--	--

관을 건립하기 위한 동 부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셋째, 강북구 미아동 5-55번지의 토지 약 722평(2,381㎡), 강북구 미아동 5-56 외 1번지 약 1,216평(4,013㎡), 도봉구 창동 55-20 외 3번지 약 110평(364㎡)을 주택조합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의 후단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미아타운 재건축조합, 미아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동 제1지역 주택조합에게 각각 매각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넷째, 서초구 반포동 745-4번지의 토지 약 29평(96㎡)을 제일약품(주)에게 수의계약으로 판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1호의 후단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서울인 경우 200㎡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제일약품에 매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섯째, 일반경쟁입찰 매각대상 4건은 약 3,862평(12,743.㎡)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잠중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매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송파구 송파동 104번지와 송파동 104-1번지의 재산은 '98.4.9 제103회 임시회의시 우리 의회에서 매각토록 의결한 재산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후 2년이 경과한 재산의 경우에는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포함된 것입니다.

□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매각코자 하는 10건의 시유재산 등은 수의계약 6건, 일반경쟁매각 4건으로 이들은 지방재정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근거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의 규정에는 위배되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된 토지가 녹지인 경우에는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녹지를 보존토록 하여 서울시민들이 맑고 푸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 수의계약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2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유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계획안의 승인을 얻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계획이 졸속으로 수립되었다 할 것이며,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 의회에서 승인한 우리 서울시민들의 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상이자”를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직계존·비속(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